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공기호흡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필요 등 기술기준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부가장치에 대한 시험기준 삭제(제3조제2항)
- 나. 경보장치 작동시점과 등지게 점멸장치 작동시점 일치화(제4조제9항)
- 다. 표시내구성 시험 도입(제19조의7)